

예산총칙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4,478,790	19,934,364
일반회계	584,392,513	17,531,775
특별회계	80,086,277	2,402,588
공기업특별회계	44,885,594	1,346,568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4,885,594	1,346,568
기타특별회계	35,200,683	1,056,020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20,735,000	622,050
농공지구조성사업	6,199,634	185,9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781,197	203,436
의료급여기금운영	1,069,496	32,085
주민소득지원자금	415,356	12,46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명세" 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3,719,980천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032,24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9,934,364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